힐스테이트

광주 힐스테이트 연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11.01.(수)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북구)은 「주택법」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 : 기존 '청약 신청전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 변경 '청약 신청전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비수도권 1순위 발생요건이 기존 '1년' → '6개월'로 변경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업무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3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6조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2017.09.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2017.09.20.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01.) 현재 광주광역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전라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5-85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3개월이상 계속 거주(2017.08.01.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단,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직장 근무처 이동에 따른 이주자(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외,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가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법」제23조에 의거 매도청구(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56번지 / 면적 : 60㎡) 소송 진행 중인 대지가 있음을 알려 드리며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기존 '청약제한 기간 3개월' → 변경 '청약제한 기간 1년으로 연장'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로 향후 주택시장 변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은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본 아파트 당첨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조정대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구성되어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 금융결제원(국민은행 포함)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과 국민은행(www.kbstar.com)의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 포함) 청약통장 가입자(1순위) 또는 거래계좌 보유자(2순위)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1순위) 또는 거래계좌 보유자(2순위)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 국민은행홈페이지 (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 청약
이용대상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인터넷뱅킹 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과 - 33039 (2017.11.0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226번지 일원(힐스테이트 연제)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1층, 지상14층~25층, 17개동, 총 아파트 1,196세대(특별공급 388세대)
[일반(기관추천) 118세대, 다자녀가구 118세대, 신혼부부 118세대, 노부모부양 34세대 포함]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1) 공급면적 및 세대수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및 아파트 코드	TYPE	주택형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일반특별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반공급	계	최저층 세대수	입주 예정일
민영	2017001447-01	82	82.4110	82.4110	23.5060	105.9170	35.8406	141.7576	56.3030	21	21	21	6	145	214	10	2020.05
	2017001447-02	84A	84.9934A	84.9934	24.1155	109.1089	36.9637	146.0726	58.0673	89	89	89	26	600	893	47	
	2017001447-03	84B	84.9947B	84.9947	24.2111	109.2058	36.9642	146.1700	58.0682	8	8	8	2	63	89	5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에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블록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합산시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청약신청 시 반드시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공유대지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층별	동,라인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총액(세대)	계약금 1차 계약시	2차 1개월내	중도금 1차(10%) 2018.05.16	2차(10%) 2018.09.16	3차(10%) 2019.01.16	4차(10%) 2019.06.16	5차(10%) 2019.10.16	6차(10%) 2020.02.16	잔금 (30%) 입주지정일
82	1F	103동 2,3,4/104동 2,3,4	6	84,341,000	184,659,000	269,000,000	10,000,000	1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26,900,000	80,700,000
	2F	102동1,2/103동,104동1~4	10	84,341,000	197,659,000	282,000,000	10,000,000	1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84,600,000
	3F	102동1,2/103동,104동1~4	10	84,341,000	206,659,000	291,000,000	10,000,000	1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87,300,000
	4~6F	102동1,2/103동,104동1~4	30	84,341,000	212,659,000	297,000,000	10,000,000	1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89,100,000
	7~16F	102동1,2/103동,104동1~4	100	84,341,000	218,659,00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17~24F	102동1,2/103동,104동1~4	58	84,341,000	221,659,000	306,000,000	10,000,000	2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91,800,000
84A	1F	108동1/115동3,4/116동1,2,4/117동1~4	10	86,984,000	181,516,000	268,500,000	10,000,000	1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80,550,000
		108동2/109동1	2	86,984,000	184,016,00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101동,106동2~4/107동1,2/108동,109동3,4/110동1,2,4/111동112동1~4/113동1,2,4/114동1,3,4/115동1	30	86,984,000	190,016,000	277,000,000	10,000,000	1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83,100,000
	2F	108동1/115동3,4/116동1,2,4/117동1~4	10	86,984,000	194,016,000	281,000,000	10,000,000	1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84,300,000
		108동2/109동1	2	86,984,000	197,016,000	284,000,000	10,000,000	1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85,200,000
		101동1~4/105동1,2/106동1~4/107동1,2/108동109동3,4/110동1,2,4/111동112동1~4/113동1,2,4/114동1,3,4/115동1	34	86,984,000	203,016,000	290,000,000	10,000,000	1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000,000
	3F	108동1/116동1,2,4/117동1~4	8	86,984,000	203,016,000	290,000,000	10,000,000	1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000,000
		108동2/109동1/115동3,4	4	86,984,000	206,016,000	293,000,000	10,000,000	1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87,900,000
		101동,106동1~4/105동107동1,2/108동109동3,4/110동1,2,4/111동112동114동1~4/113동1,2,4/115동1	35	86,984,000	212,016,000	299,000,000	10,000,000	1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89,700,000
	4~6F	108동1/116동1,2,4/117동1~4	24	86,984,000	209,016,000	296,000,000	10,000,000	1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88,800,000
		108동2/109동1/115동3,4	12	86,984,000	212,016,000	299,000,000	10,000,000	1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89,700,000
		101동,106동1~4/105동107동1,2/108동109동3,4/110동1,2,4/111동112동114동1~4/113동1,2,4/115동1	105	86,984,000	219,016,000	306,000,000	10,000,000	2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91,800,000
	7~16F	108동1/116동1,2,4/117동1~4	71	86,984,000	216,016,00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108동2/109동1/115동3,4	35	86,984,000	219,016,000	306,000,000	10,000,000	2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91,800,000
		101동,106동1~4/105동107동1,2/108동109동3,4/110동1,2,4/111동112동114동1~4/113동1,2,4/115동1	338	86,984,000	225,016,000	312,000,000	10,000,000	2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93,600,000
	17~25F	101동106동1~4/105동107동1,2/110동,113동1,2,4/111동112동1~4	173	86,984,000	228,016,000	315,000,000	10,000,000	2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94,500,000
84B	1F	116동3	1	86,986,000	181,514,000	268,500,000	10,000,000	1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26,850,000	80,550,000
		109동2	1	86,986,000	187,014,000	274,000,000	10,000,000	1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27,400,000	82,200,000
		110동3/113동3/115동2	3	86,986,000	190,014,000	277,000,000	10,000,000	1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27,700,000	83,100,000
	2F	116동3	1	86,986,000	194,014,000	281,000,000	10,000,000	1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84,300,000
		109동2	1	86,986,000	200,014,000	287,000,000	10,000,000	1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6,100,000
		110동3/113동3/115동2	3	86,986,000	203,014,000	290,000,000	10,000,000	1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000,000
	3F	116동3	1	86,986,000	203,014,000	290,000,000	10,000,000	1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000,000
		109동2	1	86,986,000	210,014,000	297,000,000	10,000,000	1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29,700,000	89,100,000
		110동3/113동3/115동2	3	86,986,000	212,014,000	299,000,000	10,000,000	1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89,700,000
	4~6F	116동3	3	86,986,000	209,014,000	296,000,000	10,000,000	1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29,600,000	88,800,000
		109동2	3	86,986,000	216,014,00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110동3/113동3/115동2	9	86,986,000	219,014,000	306,000,000	10,000,000	2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91,800,000
	7~16F	116동3	9	86,986,000	216,014,000	303,000,000	10,000,000	2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109동2	9	86,986,000	222,014,000	309,000,000	10,000,000	2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92,700,000
		110동3/113동3/115동2	28	86,986,000	225,014,000	312,000,000	10,000,000	2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93,600,000
	17~25F	110동3/113동3	13	86,986,000	228,014,000	315,000,000	10,000,000	2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31,500,000	94,50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82.4110	84.9934A	84.9947B
약식표기	82	84A	84B

▣ 공통사항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5-85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단,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부활이 허용될 수 있으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추가 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계약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또는 실측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리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받으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입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익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Ⅱ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본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분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방문 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특별공급은 방문신청접수만 가능)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 등)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및 은행창구)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 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당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제 적용기준 등)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이 취소되며, 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제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 제1순위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본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순위 포함)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Ⅲ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접수 및 당첨자 선정 일시, 장소

구 분	신청일자 및 시간	당첨자 선정 일자	장 소
일반 특별공급(기관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017.11.06.(월) (10:00~14:00)	2017.11.06.(월) (16:00 이후)	당사견본주택 [서구 화정동 179-1번지]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노부모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합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신청방법 : 해당 청약 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일시 및 장소 : 2017.11.06(월) 16:00 이후 /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2017.11.20(월) ~ 2017.11.22(수) (3일간,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건만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므로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의 횟수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완화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접수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합니다. 특별공급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며,(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 우선공급과 다름) 낙첨 시 별도의 일반 공급신청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호의 경우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첨자로 간주하며,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를 제외함]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 / 면적별 기준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자격을 갖춘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여야 함)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시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1) 일반 특별공급(기관추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을 말함]으로서 해당 기관장에 추천을 받은 자(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함)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함)단, 경쟁이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우선공급 합니다.(단,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직장 근무처 이동에 따른 이주자(종사자)에 대하여는 예외,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광주광역시 고시 제 2015-85호)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이며,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8호) 및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는 제외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해당기관의 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단, 해당기관의 장이 우선순위 없이 추천한 경우에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합니다.
- 공급수량 이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타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타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 총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회, 일반 공급 1회 중복신청이 가능(단,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2017.08.01.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우선순위 배점표 (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점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해당 사항	비 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미만(1998.11.02.~2017.11.01.) 출생자 및 태아를 포함)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미만(2011.11.02.~2017.11.01.) 출생자 및 태아)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 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주택소유 등 당첨사실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 2015.12.29.>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에서 정하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로 인정함(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전년도(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N-5}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함)이하여야 함.(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포함)의 합산 합니다.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 소득입증서류 및 기타유의사항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638호, 2015.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1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② 2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자(광주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광주지역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 순)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신혼부부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서식 2)	• 접수장소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총 주택 건설량의 3%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에 따른 제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노부모특별공급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로 간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6호 미적용)합니다.
②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③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2017.08.01.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일점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 가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 분	합 계	주택형 82	84A	84B
일반 특별공급(기관추천)	118	21	89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8	21	89	8
신혼부부 특별공급	118	21	89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4	6	26	2
합 계	388	69	293	26

6) 특별공급 신청 시 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 당 서 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①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본인	• 견본주택 비치양식 사용 •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②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		③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④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⑤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 만으로 입증이 안 될 경우 제출
		○	⑥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⑥,⑦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⑦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⑦ 제출
		○	⑧청약통장가입(순위) 확인서	본인	• 금융결제원 청약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	⑨제3자 대리인 서류	본인 / 대리인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신청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대리 신청자의 도장
일반 특별공급	○		①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장애인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 불가)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 우선순위 배점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양식 사용
		○	②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③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④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⑤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⑥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⑦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⑧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⑨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⑩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자격 여건 구비 여부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②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③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④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⑤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⑦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⑧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⑨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⑩소득증빙 구비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①가점 배점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②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③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④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③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④주민등록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⑤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 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 필요합니다.

Ⅳ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인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1)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전주택형	• 85㎡ 이하 주택 :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 85㎡ 초과 주택 : 추첨제 적용(추첨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예치금액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5) 모집공고일(2017.11.01.)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2017.09.20.이후 모집공고된 주택)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거주자	2017.11.07.(화요일)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 일시 : 2017.11.14.(화요일) • 장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등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으로 인해 응대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2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2017.11.08(수요일)	• 접수장소 · 청약통장 취급은행 전지점 · 인터넷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인터넷 08:00~17:30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및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할 경우 참가은행 거래 지점에서 접수 가능.(접수시간: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 거래은행에서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 개설 후 2순위 청약에 참여 가능합니다.
※ 2순위 청약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청약 신청금을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전체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 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1994.0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신청 평형(전용면적 85㎡이하)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Ⅴ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일반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공급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예비당첨자 선정비율 20%포함)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자는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17.09.20. 이후 모집공고) 주택에 한함)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
※ 2017.09.20.이후 모집공고된 주택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하여야 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하며(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 전체를 추첨제로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됨.

3) 청약신청 접수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자본인이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만약, 은행에서 부득이하게 청약신청을 하실 경우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Ⅵ 청약관련 유의사항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청약 가점제 관련 유의사항[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1순위 일반 공급물량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과거 2년이내(2017.09.20.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가점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분리 시 부양가족수 산정) • 신청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이 등록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양가족의 인정 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 손자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부여 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상기 기재사항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 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 상 등기 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주택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가점제 적용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 수도권 외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만을 소유한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으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노약자 및 장애우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포함)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자 거래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청약 신청금 (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세대주 및 배우자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가 분리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3자 대리신청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청약) 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 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거주지, 주민등록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추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용도란은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순위 청약관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신청접수 가능)

1) 2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전 주택형	비 고
청약신청금	100만원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2)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 영업일이후 청약자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 됨(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제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에서 계좌로 환불 받아야 합니다.
- 제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 신청 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인장 및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 신청 시와 동일), 위임장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1) 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자 선정 발표일 : 2017.11.14(화) (동·호수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추첨함. 단, 금융결제원의 일정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 • 당첨자를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 주택형별로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를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5-85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3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 85㎡ 초과 주택의 경우 전원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와 함께 발표됨)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5-85호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3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3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 예비 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공고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및 계약취소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추후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3)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4)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이외 청약자)
인터넷	이용기간	• 2017.11.14. ~ 2017.11.23.(10일간)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자사실조회
전화 (ARS)	이용기간	• 2017.11.14. ~ 2017.11.23.(10일간)	
	이용방법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서비스코드: 9 → 1 → 3)	• 2017.06.15.부터 서비스 폐지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주택 청약신청 시 SMS통지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17.11.14.(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전화(ARS)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Ⅶ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계약 유의사항

1) 유의사항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7.11.20.(월) ~ 2017.11.22.(수) (10:00 ~ 16:00까지)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아래 계좌로 직접 무통장입금하여야 하며, 당사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합니다.
- 당첨 후 계약 기간(2순위자 포함)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2016.11.03.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2017.01.20.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당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분양)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602호 홍길동의 경우 → 101-6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0-032-502954	아시아신탁(주)

- 당 현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았으며, 이에 본 아파트의 자금관리 및 분양대금수납을 위와 같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비 계좌 및 유상옵션 계좌와 달라 입금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구 비 서 류
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대리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인감도장(대리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도장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계약조건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자 중 청약신청 시 가점점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된 경우(단, 착오 기재한 청약가점 항목 확인결과 최종 가점점수가 해당 주택형 당첨 최저가점 점수 이상을 경우 당첨자로 인정) - 특별공급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취소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음.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가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 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 체결을 통보 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 등을 포함), 차량 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 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습니다.(2009.4.1.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중당첨자 또는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중도금 대출안내 <본 아파트는 회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은 2016년 10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주택으로 2016년 10월 1일 발효된 경제정책 방향 중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 보증제도 개선"에 따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및 보증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향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납부 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나,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당사가 통보하는 일시에 대출신청 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 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입주예정시기

■ 입주예정일 : 2020년 05월 중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Ⅷ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발코니확장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20%) 2019.06.16.	잔금(70%) 입주시
82	14,900,000	1,490,000	2,980,000	10,430,000
84A	14,900,000	1,490,000	2,980,000	10,430,000
84B	14,900,000	1,490,000	2,980,000	10,430,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계약금,중도금,잔금	100-032-503021	아시아신탁(주)

■ 유상옵션 설치비용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TYPE	품목	설치금액	계약시(10%)	중도금(20%) (2019.06.16.)	잔금(70%) (입주시)
선택	82	3대 (거실+주방+침실1)	5,517,000	551,700	1,103,400	3,861,900
		5대 (거실+주방+침실1,2,3)	7,660,000	766,000	1,532,000	5,362,000
	84A	3대 (거실+주방+침실1)	5,517,000	551,700	1,103,400	3,861,900
		5대 (거실+주방+침실1,2,3)	7,875,000	787,500	1,575,000	5,512,500
	84B	3대 (거실+주방+침실1)	5,617,000	561,700	1,123,400	3,931,900
		5대 (거실+주방+침실1,2,3)	7,761,000	776,100	1,552,200	5,432,700

(2)주방가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설치금액	계약시(10%)	중도금(20%) (2019.06.16.)	잔금(70%) (입주시)
하이브리드 쿡탑	582,000	58,200	116,400	407,400
김치냉장고	1,079,000	107,900	215,800	755,300

(3) 인테리어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TYPE	품목	설치금액	계약시(10%)	중도금(20%) (2019.06.16.)	잔금(70%) (입주시)
82	거실간접등(2면) + 픽쳐레일	778,000	77,800	155,600	544,600
84A		777,000	77,700	155,400	543,900
84B		795,000	79,500	159,000	556,500

■ 플러스 옵션 설치품목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0-032-504970	아시아신탁(주)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제5항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2010.2.18 개정 시행)
- 발코니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설치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섀시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외 유상옵션 품목은 별도 안내 후 계약진행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도 인접세대가 기본형을 선택하는 경우, 단열재 설치에 따른 커튼박스의 깊이, 우물천정의 깊이,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한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이 입주자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품목
1) 창호	목창호(문틀, 상부마감판, 문선, 손잡이철물, 경첩외 하드웨어일체), 실외기 플라스틱도어, 디지털도어락	목창호가틀, 플라스틱창호, 내장, 현관방화문
2) 바닥재	[마루](걸레받이포함) 거실, 주방, 침실 / [타일, 석재] 현관, 발코니바닥 / 인조대리석 현관 디딤판	바닥 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3) 벽	초배지, 벽지, 벽체도장, 장식벽(아트월, 타일), 주방벽체타일 걸레받이	단열+석고보드 / 미장 / 발코니벽체도장
4) 천장	초배지, 천장지, 반자돌림(몰딩포함), 우물천장(몰딩포함)-거실만해당-,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5) 조명기구	각실 조명기구 일체 (욕실 포함)	전기배관, 전기배선 매입박스
6) 욕실	<위생기구>양변기(부부욕실 비데), 세면대, 수전류 등 <욕실 인테리어>욕실타일, 천장재(천정틀, 배기휀 포함), 샤워부스, 젠다이, 액세서리, 욕실장, 스위치, 콘센트, 배수트렌치 등 마감 일체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 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 배관배선
7) 주방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 (하부장 상판, 주방가전, 액세서리 일체 포함), 주방벽체타일, 주방TV폰, 주방수전류, 씽크볼, 렌지후드, 쿡탑등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렌지후드(자동식 소화기 설치관련), 전기 및 통신 배관/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8) 가구류 및 기타	현관신발장, 드레스룸장,파우더장, 수납선반, 화장대, 반침가구(침실붙박이장, 시스템장), 가구도어, 수전류 일체(발코니, 세탁실)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82	84A	84B
금 액	24,417,000	25,117,000	25,114,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마이너스 옵션금액)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 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 및 장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타일 및 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 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Ⅸ 유의사항

▣ 유의사항

1. 공통 유의사항
- 단지 내 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공원,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른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재 및 포장패턴,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 사용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공동 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반과 접하여 지하층이 계획된 108, 109, 112, 114, 115, 116, 117동은 지하층 ELEV.홀과 계단실에 습기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별 지반고에 따라 주차장 레벨이 상이하며 경사로에 의해 연결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3동과 104동간 일부 구간은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구획이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8, 109동 동측에 154kV 송전탑(최단 이격거리 42.4m, 지반높이 63m, 자체높이 54.4m)이 이전 설치될 예정으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필히 송전탑 위치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해당관청, 한국전력공사 등에 송전탑 철거, 이설,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위치에 따라 세대에서 송전탑, 분묘가 보일 수 있으며, 단지 서측에 위치한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4동 동측에 외촌회관, 경로당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컴퓨터 그래픽 및 단지모형 상의 몰딩 형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실제 시공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옥상에 계획된 경사지붕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옥탑의 높이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출입구의 진출입자로 계획은 교통계획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아파트 및 근린상가용 쓰레기 분리수거함, DA, TOP LIGHT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부 색채 계획 및 줄눈 계획, 저층부 석재뿜칠의 디자인 및 색상은 도장 전, 색채심의 진행 결과에 따라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바닥포장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및 실제 시공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추후 최종 측량 성과도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일부 도로 폭, 레벨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위는 주변 도로의 레벨 차이에 따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동측의 도로부지는 당 사업지보다 높게 위치하여 단지 내측으로 일부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위의 도로 레벨에 의해 일부 근생시설과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아파트 입주자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어떠한 변경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보행통로 및 소형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입면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 문주 포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세부계획 등은 실 시공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내부 마감까지 설치되며 집기류는 제외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불편 우려사항
- 동 공동주택(6층 이상인 경우)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 등을 갖추고 실내소음도 45dB 이하 기준으로 설치된 공동주택입니다. • 주변 개설기부채납도로 및 기존 도로(호남고속도로 및 인접도로)의 교통소음과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으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남고속도로 인근의 경관녹지에 방음벽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115,116,117동의 일부세대에는 조망, 일조, 채광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각 시설물의 위치는 실 시공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충에 따라 법적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과 보행자에 의한 소음, 사생활침해 등으로 거주시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어린이 놀이터와 면한 일부 세대의 경우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의 영향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측정결과**
- 평가기관 : 정온테크
- 측정결과 ① 본 주택에 인접한 북부순환도로, 부체도로, 서측 18M(하서로), 남측15M 개설도로, 서측 15M 개설도로에 대한 실외소음도 예측 평가결과, 실외소음도 기준 「65dB(A)미만」을 만족함.
② 본 주택에 인접한 호남고속도로에 대한 실외소음도 예측 평가결과, 5층 이하 세대의 공동주택 실외소음도 기준 65dB(A)미만을 만족함.
③ 본 주택에 인접한 호남고속도로에 대한 실외소음도 예측 평가결과, 6층 이상 세대의 공동주택 실내소음도 기준 45dB(A)이하를 만족함.
- 측정결과 : 정온한 음환경 조성을 위해 남측 호남고속도로 방향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을 경우를 3D시뮬레이션 의해 모델링한 예측결과
① 방음벽 설치시 단지내 세대별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5층이하 세대의 주간 최대소음도는 115동 503호에서 63.8dB(A), 야간 최대소음도는 115동 503호 62.8dB(A)로 나타남.
② 방음벽 설치시 단지내 세대별 실내소음도 예측결과 6층이상 세대의 최대 소음도는 117동 1502호에서 44dB(A)로 나타남.
- **소음측정결과Leq[dB(A)]**

측 정 기 관	측 정 위 치	측 정 결 과	비 고
정 온 테 크	101동~117동 (각동 라인별 2개지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실외소음(65dB(A)) 6층이상지점 실내소음 45dB(A)	기준만족

- 일조환경 시뮬레이션 실시 결과

구분동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합계	확보비율(%)
세대수		91	44	95	75	46	91	48	56	60	94	88	80	92	58	58	60	60	1,196	-
총 일조4시간이상 확보 세대수 (08:00~16:00)		60	24	66	75	31	55	39	54	52	56	56	67	73	37	58	60	60	923	77.17
연속 일조2시간이상 확보 세대수 (09:00~15:00)		57	28	75	75	38	56	42	54	53	76	64	71	78	37	58	60	60	982	82.11
수인한도	만족세대수	60	27	75	75	38	56	42	55	53	76	64	72	78	37	58	60	60	986	82.44
	만족률(%)	65.93	61.36	78.95	100	82.61	61.54	87.50	98.21	88.33	80.85	72.73	90.00	84.78	63.79	100	100	100	82.4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친환경주택의 성능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 2292 시험방법에 의해 기밀성 1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난방/급탕/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KS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및 콘센트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에 일괄소등스위치 1개소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 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에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장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적용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장수명 주택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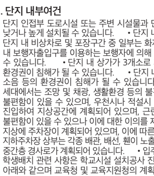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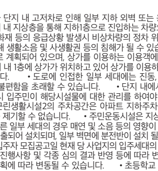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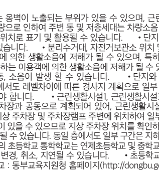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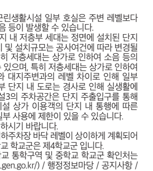

3. 단지 내부여건
- 단지 인접부 도로시설 또는 주변 시설물과 단지 내 고저차로 인해 일부 지하 외벽 또는 옹벽이 노출되는 부위가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은 주변 레벨보다 낮거나 높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층을 통해 지하1층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변 동 및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정면에 설치된 단지 내 보행자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가 3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한 생활소음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세대는 상가로 인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1층에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한 생활소음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저층세대는 상가로 인하여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도로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진동,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대지주변과의 레벨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채광, 생활환경 등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서도 레벨차이에 따른 경사지 계획으로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로 인해 실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우천시나 적설시 입주민이 해당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1, 근린생활시설3의 주차공간은 단지 주출입구를 통해 진입하여 지상공간에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2의 주차공간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공동으로 계획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 상가 이용객의 단지 내 통행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운동시설은 지상 주차장 및 주차장램프 주변에 위치하여 일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일부 세대의 경우 매연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상 주차장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층에서도 일부 구간은 지하주차장 바닥 레벨이 상이하게 계획되어 중간층 경사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 사업지의 입주세대의 초등학교 통학학교는 연제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군은 제4학교군 입니다.
- 학생배치 관련 사항은 학교시설 설치공사 진행사항 및 각종 심의 결과 반영 등에 따라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확인처는 아래와 같으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dongbu.gen.go.kr/) / 행정정보마당 / 공지사항 / '통학구역 조정' 참조 • 중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학교군 및 중학군 고시' 참조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플러스(유상)옵션 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연출용 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연출용 품목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기기, 콘센트 및 가전제품, 기타 전기제품은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냉난방용으로 설치 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본공사(옵션 선택)시 사양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조명과 배선기구의 수량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으며, 주변 조성계획 등은 본 사업지와 무관한 사항으로 향후 인·허가관청 변경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은 제조사의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제조사명 및 제품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 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 할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침대, 책상 등의 벽 부착형 및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시 제외 품목입니다.

■ 발코니확장 관련 유의사항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었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발코니에는 배수 등을 위한 드레인, 선홈통 및 냉온수전 등이 설치되며 실제 시공시 발코니 확장 등에 따라 세부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고,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기본형 세대가 인접한 확장세대는 단열재 설치에 따른 우물천장(플러스(유상)옵션)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인쇄물 관련 유의사항
-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공급면적(㎡)× 0.3025 또는 형별공급면적(㎡)÷ 3.3058]
- 단지 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및 시공관련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시공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에 대한 미확인 내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창호의 형태, 재질, 색상, 프레임 두께,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도면,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방가구 개수대, 후드 등 설치위치는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본 공사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 및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 홍보물 및 모델하우스 모형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본 공사시 설비,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2. 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13.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① 고정형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파우더가구 등)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②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14.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15.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본 공사시 계량기, 세대통합 통신 단자함과 전기분전반이 설치되며,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화장실 천정에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 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7. 본 공사시 계량기, 세대통합 통신 단자함과 전기분전반이 설치되며,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화장실 천정에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 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구 공간 내부 형태가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18.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19.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현관, 발코니(다용도실포함),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21.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자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22.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3. 욕실의 바닥 배수구 형태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단차(발코니 포함)는 물 구배 및 시공성으로 인해 위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 높이는 물막이턱 기능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24.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에도 주동 조합에 따라 대피공간의 실제 유효폭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5.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 및 바닥열 급기장치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7.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28. 본 공사시 욕실 천정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 및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29.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0. 주민공동시설물 및 근린생활시설의 냉방 실외기 설치위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32.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3.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형태·설치위치 등은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4. 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 실외기의 폭,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5.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본 아파트는 동측 인근에 철탑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남측의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매연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변 경관녹지에 방음벽이 설치 예정으로 단지 배치에 따라 일부 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6.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7.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 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지하층의 환기, 채광, 소방, 이동을 위한 각종 시설물(DA, TOP-LIGHT, 계단실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될 수 있습니다. 9.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단지 내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각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본 단지의 공동주택 기계실 포함 저수조 등은 105동 지하층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에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근린생활시설2와 인접한 103, 104동 지하층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용 기계/전기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근 세대에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에 썬큰과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공간에는 채광, 환기가 되지 않을 수 있고, 향후 실외기실 등의 계획 반영에 의해 일부 레이아웃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4. 본 아파트는 인근에 호남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5.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를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6. 105동 발코니 앞 발전기 급배기구가 설치 예정 되어있으며, 발전기 운전 시 매연과 소음이 발생 되오니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7.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에 위치하여 채광과 환기에 불리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해당 공간만 제공되며 일체의 가구, 집기류, 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18.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설치될 예정으로, 주변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 상의 조감도와 배치도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주동 외부 색채 계획 및 줄눈 계획, 저층부 석재뿜칠의 디자인 및 색상, 마감재, 측벽그래픽 등은 인·허가, 색채 심의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3. 단지내 조경, 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외부 시설물(외부계단,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문주, DA, TOP Light 등)의 위치, 개소,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5.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분양시 홍보물의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옥탑부 디자인, 주동형태, 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인·허가기관의 계획에 의해 추후 인·허가관청에 별도의 경관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관계로 외부색채 및 옥탑디자인 등 외부 환경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3개층)은 석재뿜칠 기준으로 시공되고, 상부층은 수성페인트로, 저층부 몰딩은 IPU몰딩으로 시공됩니다.
12. 단지내 레벨차로 인한 사면구간 형성으로,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3. 각종 인증절차에 따라 단지 구조물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단지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옥탑구조물의 형태는 추후 시공성 및 품질 개선의 일환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외부 색채 디자인도 모형 및 컴퓨터그래픽에 표현된 내용과 일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후 최종사업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공간만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 및 가전제품의 이동 및 설치가 어려운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피난계단 방화문과 세대 현관문은 엘리베이터 홀이 협소함에 따른 일부 이용 상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 등 각종 인증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질, 동가 수준의 제품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입주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표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시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을 설계도면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외부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대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에 대한 보수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은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등의 경우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단지내에 해양도시가스 정압기(실)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에는 정압기(실) 설치부지는 해양도시가스에 무상 공급으로 제공됩니다.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커튼박스의 깊이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섀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에 면한 실의 경우 진동 및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Hi-oT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지원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SK텔레콤에서 2년간 무상 제공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 되오니, 계약 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IoT 가전제품을 연동하기 위한 세대내부 무선 WiFi용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함) • 한전 인입 장비 및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 경계에 설치 예정이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항공기 유도등, 태양광설비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단지 차량출입구의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까페, 주민회의실), 어린이놀이터 3개소, 주차장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회 사 명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화성감리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감리금액	2,518,187,709	584,499,000	22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17-101-0015000 호	이천오백오십육억오천팔십오만원정 ₩255,650,85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 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 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 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 섀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시행수탁자	상 호	아시아신탁(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시행위탁자	상 호	(주)웰메이드씨앤디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8, 9층(역삼동, 다온빌딩)
	법인등록번호	200111-0322168
시공사	상 호	현대엔지니어링(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2153015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226번지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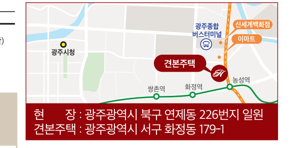

현 장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226번지 일원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1

문의 1577-1488

| 총1,196세대 | 82㎡ / 84㎡

위탁 Well made 웰메이드 씨앤디 시행 아시아신탁 시공 현대엔지니어링